칠레 자원개발 주요 법제도 분석
(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이승민 러시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I. 서론
II. 칠레 광물 자원산업 현황
III. 칠레 자원 관련 주요 법제
IV. 결론

I. 서론

남미대륙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칠레 공화국(이하 '칠레')은 한반도의 3.4배(757,000km^2) 이르는 면적에 남북으로 전 세계에게 영토의 길이가 가장 긴 국가 중하나이다. 칠레는 태평양에 접하여 중남미 무역허브에 적합한 지형학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이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2003.2, 발효 2004.4) 국가이기도 하다. 칠레는 약 1,776만명의 인구수를 갖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칠레의 GDP는 약 2,580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14,900달러 수준이다.

칠레는 천연자원 중에서도 광물 매장량이 풍부하고, 그 중에서도 구리, 요오드, 리튬, 셀레늄과 레늄의 경우 세계 1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몰리브덴의 매장량도 세계 3위로 평가 받고 있다. 칠레에서 구리와 몰리브덴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구리 매장량은 1억 9,000만 톤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몰리브덴, 아연 등 다양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가이다. 2008년 전세계 외환이기 이후 2010년부터 2013년 5% 중반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2014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1%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국제신용등급 평가기관들로부터 안정적인 투자등급을 부여 받고 있으며 예를 들어 S&P로부터는 중남미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A+' 등급을 부여 받고 있다.

중남미의 국가 중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갖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내외국인 동등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칠레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 그 중에서도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한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의 제한으로 칠레에서의 자원개발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 특히 광물 개발과 관련된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보 및 선행연구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칠레의 자원 관련 주요 법제, 그 중에서도 광물법(Mining Code)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광물법 외에도 자원개발과 관련된 투자 및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업 일반 법제 및 조세 등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칠레 광물 자원산업 현황

1. 주요 광물 자원 매장량 현황

칠레는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그 중에서도 광물자원의 매장량은 세계적으로도 주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구리, 요오드, 리튬, 몰리브덴 등의 경우 주요 매장량 보유국에 속한다. 다만, 광물자원은 풍부한 반면,

탄화수소 자원이 부족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칠레는 가채 매장량 기준으로 구리, 요오드, 리튬, 셀늄, 레늄 등은 세계 1위를 위치를 점하고 있다. 칠레의 대표적인 광물인 구리는 전 세계 매장량과 공급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데, 2014년 총 590만톤을 생산해 세계 구리 생산량의 약 32%를 차지하였다. 칠레의 대표적인 광물자원의 가채매장량은 아래표와 같다.

광물 자원	단위	칠레	세계	비중(%)	세계순위
구리	천 톤	209,000	700,000	29.8	1
요오드	천 톤	21,000	31,600	66.4	1
리튬	천 톤	12,900	36,000	35.8	1
몰리브덴	천 톤	39,000	266,000	14.6	3
셀레늄	천 톤	20	86	23.2	1
레늄	천 톤	1.3	2.5	52.0	1

출처: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5 (가채매장량 기준)

2. 광물산업 현황

칠레 광업 총생산은 307억 달러에 달해 칠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 수준(2013년 기준)으로 제조업, 유통, 건설분야의 비중보다 크다. 칠레 광업은 금융, 수도, 운송, 유통, 기타 제조업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광업 경기가 칠레 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매우 높으며, 다른 한편으로 칠레의 모든 산업이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칠레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자원에 대한 수요감소, 가격하락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경제 전체가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칠레는 지속적인 신규 광산개발 및 광산 확장계획을 발표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그 중에서도 구리, 금, 리튬광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리 매장량은 1억 9,000만 톤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4년 구리 생산량은

590만 톤으로 매장량과 생산량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구리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에스콘디다(Escondida) 광산을 비롯해 안디나(Andina), 엘 테니엔테(El Teniente)와 같은 광산이 운영 중에 있다.

몰리브덴의 경우 2013년 몰리브덴 생산량은 38,700톤으로 Codelco 소유 대부분의 광산들이 구리 채광 시 몰리브덴을 부산물로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아연의 경우는 Sociedad Contractual Minera El Toqui Ltda사가 대부분의 아연을 생산한다. 칠레의 2013년 아연 생산량은 23,400톤이다. 기타 칠레에서 생산되는 주요 광산물에는 셀레늄, 규조토, 금, 포타시, 유황 등이 있다.

III. 칠레 자원 관련 주요 법제

1. 칠레 헌법

현행 칠레의 헌법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 하의 1980년 9월 11일 국민투표를 통해 10월 21일 제정되었으며,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거쳐 보완을 거듭해 왔다.

자원 개발과 관련된 헌법 규정으로는 헌법 제19조 제24항(유무형 자산에 대한 소유권)에서 액체 또는 기체 탄화수소 외 어떠한 광물이 탐사광권 내지 개발(생산)광권의 취득 대상이 되는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권은 반드시 법원 판결(결정)에 따라 설정 되어야 하고,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률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광권을 허가한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 공익에 부합하는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하도록 광권은 광권업자에게 의무를 부여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광권 제공에 적절하지 않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매장지의 탐사·개발 또는 생산은 국가 또는 국가 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관리권 혹은 작업계약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칠레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개발(생산) 관련 행정관리권 또는 작업계약을 어느 때에라도 상응하는 보상을 한 후 해지 할 수 있다. 한편, 실무상으로 광업 활동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권 내지 작업계약은 이례적이고, 일반적으로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2.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Statute, No. 600)

1974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칠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유개방과 개인 및 법인,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동등대우 원칙을 밝히고 있다(외국인투자법 제1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칠레는 외국인 투자자 자본금과 이익금의 자유로운 송금 및 조세 안정성,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투자이행기간 관련하여 광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8년, 기타 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3년을 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전원동의 하에 광업 투자의 경우(탐사 필요 시)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기타 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도 투자액 5천만 달러 이상은 최대 8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외국인투자법 제3조). 한편, 외국인투자자가 자금 투자를 집행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언제든지 투자금 및 수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외국인투자법 제4조).

칠레의 경우 자유로운 외환시장 접근 허용, 10년간(1회 연장 가능) 고정세율(42%) 선택 권리 부여, 투자의 안정성 보장 등으로 정부와의 DL600 계약 체결을 통하여 많은 외국인투자가 유치 되었다. 다만, 2014년 칠레정부가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계약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외국인투자 위축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3. 칠레 광물 산업 관련 주요 법률

칠레는 197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광물 자원 개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광업에 대해서는 헌법을 제외하고, 두 개의 법률에 의해 실행 및 발전되어 왔는데, 첫 번째는 1982년 제정된 광권 기본법(Organic Constitutional Law on Mining Concessions)과 1983년 제정된 광업법(Mining Code)이다.

광권기본법은 헌법에 따라 1982년 1월 21일 법률로 공포되었다. 광권기본법에 따르면 광권은 탐사권 또는 개발(생산)권으로 나뉘어 진다(광권기본법 제1조). 광권은 실체적인 물권이며,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이다. 이에 따라 광권은 이전 및 양도가 허용되고, 광업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당권 및 민법상 기타 부동산에 준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광권기본법 제2조).

각 광업권자는 광업권이 허용하고 있는 경계 내에서 광업 목적으로 탐사 및 개발(생산) 활동을 할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광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제한되어야 한다. 다만, 권리 제한은 토지 소유권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하여야 한다(광권기본법 제7조). 따라서 광권업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권자 및/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당 지역에서의 탐사 및/또는 개발(생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허가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다.

광업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 광권기본법은 탐사권은 최대 4년, 개발(생산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광권기본법 제17조).

광업권자는 법률로 전략적인 중요성을 선언한 광물의 경우(토륨과 우라늄 등) 현재 시장가격 및 조건으로 국가의 우선매수권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의 하나로 인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박탈할 수 없으며, 광업 활동 및 투자에 대한 특별한 선행조건이 없으므로, 개인 및 기업별로 합리적인 탐사·개발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광물 개발권은 법원에서 승인되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의 재량 및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이는 광업권과 관련된 리스크를 상당히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광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 광업법(Mining Code, No. 18248)

가) 광물 자원의 개념과 그 소유

칠레 광업법(Mining Code)은 1983년 10월에 제정된 이후로 4차례 개정만이 이뤄질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 및 적용되어 왔다. 국가는 개인 및 법인의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영토 내의 모든 광산에 대해 독적점이고, 절대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밝히고 있다(광업법 제1조). 광산에 대한 완전한 국가 소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모든 주체들(개인 및/또는 법인)은 광물자원을 탐사 및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나, 이는 광업권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광업법에서는 광물자원에 따라 광권 취득의 일정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액체 또는 기체 탄화수소, 리튬 및/또는 해양 자원에 대해서는 개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로 정한 경우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설정된 구역에 매장된 자원에 대해서도 개발권이 부여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가가 광물 자원을 독점적으로 탐사 및 생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국영기업 또는 국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광산개발권을 취득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광업법 제4조).

광권은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광권과 토지소유권은 별개의 물권으로 법률상 구분하고 있다. 즉, 광업권자와 토지소유권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자가 자동적으로 토지 하층부의 광권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광권을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적법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광권은

저당권의 설정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양도·이전 등이 허용된다.

광업권의 대상은 광구의 경계 내에 광업권이 허가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이다(광업법 제26조). 다만, 광업권은 기존 광권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광권이 허가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러한 금지/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광권 허가를 하여야 한다(광업법 제27조). 이에 따라 영토 내 육지로부터 해저 터널을 이용해 도달하는 해저를 포함하여 금속/비금속 광물과 천연자원은 그 자연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광업권의 허가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다(광업법 제6조). 또한 점토층을 제외하고 구아노 매장지, 금속을 함유한 모래장, 소금 광산, 석탄과 탄화수소 매장지 및 기타 화석 물질 매장지를 포함한 모든 광물이 광업권 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의 점토층, 모래, 바위 및 기타 건설 관련 물질은 광물자원에서 제외되며, 광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바다 연안, 호수, 연못에서 만들어진 염전도 광물자원에서 제외되어 이들 자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주가 개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여 제외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나) 광업활동을 위한 토지 사용권 및 접근권

광업권자는 생산 또는 탐사지역에 접근 하거나 기타 필요한 광업활동을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역권의 행사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주정부 또는 시당국인 경우 각각 주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그럴 수 없거나 허가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지역 법원에 의뢰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설정된 지역권은 설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하다.

다) 광권의 종류

광업권은 탐사권 및 생산권으로 구분되며, 생산권은 소유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광업법 제2조). 광업권은 해당 법원에 신청한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광업권은 광권에 명시된 광물 중 승인 지역 내에 부존하는 것에 효력을 미치고 이미 발부된 광권 허가 지역에 대하여 중복 발급될 수 없다. 광업법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록된 탐사권 및 생산권은 물권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처분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물권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다(광업법 제54조).

라) 탐사광권 신청

광구 탐사를 희망하는 자는 탐사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에서 해당 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는 등록을 위해 관할 기관으로 이송된다. 탐사광권의 존속기간은 2년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하다(광업법 제112조). 결과적으로 탐사광권의 효력은 최대 4년간 가능하다. 다만, 1회 연장 시 탐사허가 면적은 50% 축소된다.

한편, 탐사허가 발급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국적, 주소, 대리인인 경우 실질 광업허가 신청자도 기재하고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업, 재무 상태 등을 필히 기재하고(광업법 제43조), 메르카토르 좌표(UTM Grid, 허가광구의 중심점)를 4자리 혹은 10m 오차 내로 표시하고, 탐사허가 대상자 성명, 허가신청 면적은 최대 5,000ha 이하로 기재하여야 한다.

광구의 면적과 관련하여 광업법은 생산광권의 경우 100m 단위로, 탐사의 경우 1,000m 단위로 하며 허가면적은 생산의 경우 5ha, 탐사의 경우 5,000ha 이내로 정하고 있다. 허가지역은 메르카토르도법에 의한 좌표로 나타내고 광구경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광업법은 탐사신청 면적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수수료 계산은 아래 표에 따른다(광업법 제51조). 신청자는 법원에 생산광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법률로 정한 수수료를 은행이나 해당 관할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월 조세 단위/ha

탐사 신청 면적	세율
300 ha 이하	0.5/100
300 ha 초과 1,500 ha 이하	2/100
1,500 ha 초과 3,000 ha 이하	3/100
3,000 ha 초과	4/100

탐사수수료를 완납한 후 신청인은 광산등기부 등록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탐사 허가 신청에 대해 해당 법원은 심사 후 광산등기부(Registry of Mines)에 등록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한편, 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광산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광업법 제52조). 광산등기부에 등록된 이후부터 신청인은 광산 탐사를 위해 필요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법원의 광산등기부 등록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탐사 신청인은 현장조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신청 시 신청인은 현장조사 신청 탐사지역의 각 정점좌표와 정점간 거리를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수수료 납부 증명, 면허세, 탐사권신청 등록증 사본, 등록사실 공고된 광업관보(Official Bulletin of Mines) 사본, 타사지역의 좌표가 표시된 도면도 아울러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심사한 후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고를 위해 관할 기관에 파일 이송 명령을 내린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달 받은 이후 관할 기관은 기술적 관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6일 이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관할 기관의 보고서가 긍정적인 경우, 법원은 신청을 승인하고, 탐사권이 설정되었음을 판결한다(광업법 제57조). 만약 관할 기관 보고서에 지적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법원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도면 등을 관할 기관의 지적사항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관 검토에 따라 위반 또는 탐사권 신청으로 인해 파생된 권리를 취소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법원은 탐사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경미한 하자나 오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해당 하자나 오류를 법원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8일 이내 치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광업법 제56조).

마) 생산광권 신청

생산광권의 존속기간은 무기한이며, 이러한 생산광권은 신청자에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부여된다. 생산광권 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국적, 주소, 대리인인 경우 실질 생산광권 신청자도 기재하고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업, 재무 상태 등을 필히 기재하여야 한다.

탐사지역 중 개발대상 지역의 메르카토르 좌표를 4자리 혹은 10m 오차 내로 표시 하고, 생산허가 요청 지역 수 및 각 지역명, 허가신청면적 (ha로 표시, 전체 허가신청 면적은 1,000ha를 초과할 수 없음), 탐사광권 증명서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신청자는 법원에 생산광권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률로 정한 수수료를 은행이나 해당 관할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월 조세 단위/ha

생산 신청 면적	세율
100 ha 이하	1/100
100 ha 초과 300 ha 이하	2/100
300 ha 초과 600 ha 이하	4/100
600 ha 초과	5/100

수수료를 완납한 후 신청인은 광산등기부 등록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광권 신청에 대해 해당 법원은 심사 후 광산등기부(Registry of Mines)에 등록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한편, 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광산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광업법 제52조).

생산광권 허가의 경우에 한해서 생산광권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20일 이내에 현장실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신청광구의 각 정점좌표와 정점간 거리가 기재된 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 시 신청수수료 납부 증명, 면허세, 신청 등록증 사본, 등록사실 공고된 정식 광업신문(Official Mining Gazette) 사본, 타사지역의 좌표가 표시된 도면도 아울러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심사한 후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고를 위해 명령을 내린다(광업법 제60조). 공고에는 모든 기록이 기재되어야 하며, 법원 공고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 공고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 검토 결과에 따라 위반 또는 생산 광권 허가 신청에 의해 파생된 권리를 취소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법원은 생산광권 허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경미한 하자나 오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해당 하자나 오류를 법원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8일 이내 치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광업법 제60조).

법원의 생산광권 허가 판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직업, 업종, 신청공고일, 관할 기관의 보고서 작성일, 생산광권 명칭, 신청 지역의 각 정점좌표와 정점간 거리에 관한 정보, 탐사기록 등이 반영되며, 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생산광권 허가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 관련 내용이 관할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광권을 허가한 법원의 판결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 결과 광권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다(광업법 제91조). 법원 판결이 관할 기관에 등록된 이후 광권에 대한 처분권은 등기처분권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광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의 양도는 광업등기부에 권리의 변동사항을 기재함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광권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 규정에 따른다.

바) 광권의 등록 및 등록기관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사무는 광업등록소(The Registrar of Mines)에서 시행하고 있다(광업법 제99조). 법률에 따라 광업등록소는 1) 광물발견 등기부, 2) 소유권 등기부, 3) 저당권 및 제한권 등기부, 4) 금지 및 차단사항 등기부, 5) 주주명부를 보관/관리하고 있다(광업법 제99조).

광물발견 등기부에는 1) 광권 관련 신청 및 출원, 그로 인한 권리의 양도와 이전, 2) 탐사광권 허가 판결, 탐사광권의 양도와 이전에 관한 서류들이 기재된다(광업법 제100조), 부동산등기기관의 소유권 등기부에는 광권 허가 판결, 조사기록, 그로 인한 권리의 양도와 이전, 취득 확인 판결 그리고 광업법에서 정한 조합계약 및 조합계약에 대한 변경약정들을 기재/보관한다(광업법 제101조). 저당권 및 제한권 등기부에는 광권 신청 및 출원에 영향 또는 부담을 주는 각종 저당권, 지역권, 대출, 매매약정 등의 관한 사항들이 기록/보관된다(광업법 제103조). 또한 광권 신청 및 출원 관련하여 처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제한하는 소송, 금지, 처분명령, 금지, 약정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대한 사항들은 저당권 및 제한권 등기부에 기록/보관된다(광업법 제104조). 마지막으로 주주명부에는 법인 등록 및 설립 뿐 아니라 주식의 이전 및 양도, 제한 및 금지 사항이 기록/보관된다(광업법 제105조)

사) 광업권자의 주요 내용

광업법에 따르면 광권은 크게 탐사광권과 생산광권으로 구분이 된다. 칠레 광업법은 탐사광권과 생산광권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광업법 제22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개인 및 법인 포함)은 광권을 설정 중이던 설정 후이던 광권을 출원하거나 광권을 요청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광권의 지분이나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주식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광업법 제22조).

칠레는 원칙적으로 투자에 대한 내외국인 동등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광업법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요건에 대해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외국인의 칠레에서의 광업권 취득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광업법에서는 국익을 고려하여 일정한 카테고리의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광권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법원 관할 하에 광권지역이 소재하거나 광권기업의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	항소법원 법원장, 민사법원 판사 및 행정지원직원, 광업등록소 및 법원 소속 직원
2	직무상 광권 설정에 개입하거나 지질학 및 광물 발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정부 공무원, 정부산하 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
3		위 당사자들과 혼인 중인 배우자 법적 자녀

한편, 탐사광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 탐사광권을 보유한 광업권자는 생산광권 출원 시 탐사광권 관련 정보를 기재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지역에 대한 생산광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보유하게 된다(광업법 제114조).

광업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정된 광권은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에 따라 담보설정 및 자유로운 양도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업권자는 자신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따라 광권을 처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법원의 인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한편, 광권은 물권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들이 적용되므로, 이와 같은 권리 변동 시 반드시 관할 기관에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한다. 법원에 의해 광권이 허가되고 광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이 된 이후에 광업권자는 광구 탐사 및 생산에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다(광업법 제107조). 광권은 물권에 해당되므로, 광권이 허용하는 지역 내에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광권이 허용하고 있는 경계 내에서 다른 당사자가 탐사를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러한 작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광업법 제110조).

생산광권을 소유한 광업권자는 광업 안전 관련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제한 없이 광구를 자유롭게 개발할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광업권자는 광권 설정 청원 시점 또는 이후에 생산하게 될 수 있는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광물의 소유권자가 된다(광업법 제116조).

광업권자는 지역권을 제공할 권리를 갖는다(광업법 제109조). 광업권이 설정되면 탐사 및 작업의 편의를 위해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1) 광석, 표토, 광미, 광재의 적치장, 광석 분리 및 가공 시설, 통신 장치, 도관, 배수로, 댐 및, 배관, 숙박시설, 건물 그리고 그 밖의 부속시설 설치물, 2) 관련 법률에 따라 광업권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 전기 공급, 3) 도로, 철도, 비행장, 배관, 터널, 공증 케이블카, 컨베이어 벨트, 광권 지역 내에서의 공공도로, 가공시설, 철도역, 거주민 통행권과 관련된 대상 토지, 4) 광물 가공시설에 일정한 지역권이 적용될 수 있다(광업법 제120조 및 제121조).

지역권은 토지소유주의 손해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끼치는 손해를 평가한 후 설정되어야 한다. 지역권 설정 및 지역권 사용, 관련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공증 확인 받은 이해관계자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권, 통행권, 토지 사용권 등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 광업등록소에 등기되어야 한다. 지역권은 일시적인 권리로서, 지역권 설정 당시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며, 지역권 설정 당시 목적이 종료되면 지역권은 소멸하게 된다.

아) 광권 관련 면허세

광업권자는 탐사광권 또는 생산광권 종류에 따라 광업 면허세를 매년 법률로 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탐사광권의 경우에는 매년 3월 헥타르당 월 조세 단위(Monthly Tax Unit)의 1/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생산광권의 경우 매년 3월 헥타르당 월 조세 단위의 1/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세는 선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매년 3월 은행 또는 관할 기관을 통해 납부하여야 한다(광업법 제144조).

한편,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면허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 경매 절차가 개시된다(광업법 제146조). 칠레 정부는 매년 7월 1일까지 관할권을 보유한 법원에게 통지를 하여, 해당 광권 면허세 미납 사실을 알리고, 광업권자 명칭 및 소재지 등을 명시한다. 관할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 목록을 수령한 후 관할 법원은 경매 일시와 시간을 정하고, 해당 사실을 2회에 걸쳐 공고를 한다. 법원 경매는 마지막 공고 이후 30일 이후 실시되어야 한다.

법원 경매 참가자는 법원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한 후 경매에 참가한다. 광권 면허세를 미납한 광업권자는 경매 참가를 할 수 없으나, 미납 면허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경매는 중단될 수 있다(광업법 제149조). 한편, 경매 참가자가 없는 경우, 법원은 광권 허가 지역을 광권 미설정 지역으로 선언하고, 해당 광권등기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자) 광업활동의 제한

광업법은 광권의 종류와 광권에 명시된 장소에 따라 추가적으로 광업활동을 위해 추가적인 서면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추가 제한을 정하고 있다(광업법 제17조).

	허가권자	허가 대상
1	대통령	구아노 매장지나 역사적, 과학적 가치가 있다고 공포된 장소에서 생산활동 하는 경우
2	국방부 장관	폭발성의 또는 가연성의 물질이 저장된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생산활동 하는 경우
3		군사지역 그리고 항구와 공항과 같이 국방부 관할권 내에 있는 지역 또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공포된 지역으로부터 수평으로 측정하여 3,000미터 이내의 인접 지역에서

		생산활동 하는 경우
4	주지사 허가사항	도시나 마을, 묘지, 항구로 사용 가능한 바닷가와 저수지에서 채굴하는 경우 또는 건물, 공공도로, 철도, 고압송전선, 공중케이블, 수도관, 강둑 보호지역, 수자원과 공공호수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 지역, 그리고 댐, 통신망시설, 안테나, 원격통신시설과 수평거리 200m 이내 지역에서 생산활동 하는 경우 다만 건물, 철도, 고압선, 공중케이블, 수도관, 무선 통신국, 안테나와 원격통신시설이 생산 활동 이해당사자의 소유이거나 소유자가 이해당사자에게 생산 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각 관련 기관장(長) 또는 감독관	국립공원, 국가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에서 채굴하는 경우
6	국경 경비 기관	공표된 국경지역에서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으로 정한 광업활동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 배상과 별개로, 1 ~ 50까지의 월 조세 단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일 사항으로 다시 위반한 경우, 벌금은 최소 2배 이상이 부과되나, 100 월 조세 단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광업법 제18조).

차) 기타 광권 취소 사유

광권 관련 면허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외에도 광업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광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① 광업법 제 제89조에 따라 1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탐사광권을 보유한 광업권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탐사지에서 생산 작업을 행위하거나 제3자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제3자에 대한 침해 없이도 광업권자 스스로 광권을 포기하는 경우. 다만, 광업권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관할 법원의 내린 결정에 따라 해당 기록이 취소됨으로써 포기된다.

카) 관할 당국

① 광업부(Ministerio de Minería)

칠레 광업부는 1953년 3월 21일 창설된 정부기관이다. 국가 광물 부존자원의 보존, 관리와 개발에 관한 통제 및 조정 기능을 하고 국가 광업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광업부의 주요 정책 과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광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및 국가 투자 지원
- 전세계적으로 광산 생산의 주도권 유지
- 특별한 전략을 갖고 시장 발전을 위해 중소 광업회사들의 발전 지원
- 국가민간합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 및 시행
- 국영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 제언 개발
- 광업 산업의 안전 및 제도 개발, 감독

② 국립광업지질연구소(Sernageomin, Servicio Nacional de Geologí y Minerí)

국립광업지질연구소는 광업부 산하 정부기관으로서 광업권 대상의 위치, 경계, 형태와 관련된 기술적 요구조건들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광업권 등록을

관장하며 광업에 대한 규제의 기술적 측면에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또한 광업, 지질분야에 대한 대정부 조언과 국가 광업 통계의 작성과 배포, 칠레 광물자원의 부존,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정보의 관리와 배포, 광산용 화약의 공급과 분배 및 저장 관리 및 국가 광업과 지질관련 기록문서의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산 안전법을 시행 및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③ 칠레 구리위원회(COCHILCO, Comisió Chilena del Cobre)

광업부 소속 정부기관으로서 구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세제에 대한 대정부 조언과 구리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정부를 대표하여 The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Countries Exporters of Copper(CIPEC)과 같은 구리 관련 국제기구에의 참가와 관계유지, 구리 및 그 부산물의 채광, 야금 및 생산 기술 연구의 장려, 구리 및 그 부산물의 수출관리와 구리 생산에 필요한 필요 자재의 수입허가, 구리 및 그 부산물 수출대금(외환)의 회계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V. 결론

칠레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로 주요 외화 소득원인 무역수지 흑자가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를 상쇄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칠레는 전통적으로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수입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축소로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거시 경제 위축에도 칠레는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법률 및 정부정책이 매우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따라 칠레에서의 광업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의 적용 및 집행에 대해서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경제의 어려움 및 환경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광업 투자자의 보호라는 큰 정책 및 법률의 방향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외국인간의 큰 차별 없이 법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광물자원의 풍부한 매장량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도, 그리고 인접 남미지역으로의 진출 등을 고려할 때 칠레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칠레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의 외국인투자 환경 및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 기관을 포함한 민간 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Politic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le
2. Foreign Investment Statute (Decree-Law 600)
3. Organic Constitutional law on Mining Concessions (Law 18097)
4. Mining Code(Law 18248)
5.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5. USGS
6. 2016 Doing Business Report. World bank
7. 2015 칠레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한국수출입은행
8. 국가정보: 칠레.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9. 2013년 법제연구 칠레편. 한국광물자원공사
10. 광업부. http://www.minmineria.gob.cl/
11. 국립광업지질연구소. http://www.sernageomin.cl/
12. 구리위원회. http://www.cochilco.cl/